

힐스테이트평택역센트럴시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내역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원
- 사업주체 : 합정주공 8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14개동 총 1,918세대 중 일반분양 599세대 (특별공급 300세대, 일반분양 299세대)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m ²)			공급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45	45.9500	23.6300	69.5800	32
	59A	59.9600	22.8700	82.8300	279
	59B	59.9600	23.7400	83.7000	103
	74A	74.9900	24.7700	99.7600	45
	74B	74.9600	26.2000	101.1600	27
	74C	74.9600	26.2000	101.1600	3
	84A	84.9900	27.2300	112.2200	14
	84B	84.9300	27.0500	111.9800	12
	84C	84.1300	28.3400	112.4700	80
	112	112.9200	34.1400	147.0600	4
계					599

※ 상기 면적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 괄호() 안은 예비자 수 [단위 : 세대]

구분	45	59A	59B	74A	74B	74C	84A	84B	84C	112	합계
국가유공자	1(5)	5(25)	2(10)	1(5)	-	-	1(5)	-	2(10)	-	12(60)
장기복무 제대군인	-	5(25)	1(5)	1(5)	-	-	-	1(5)	1(5)	-	9(4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5)	4(20)	1(5)	1(5)	1(5)	-	-	-	1(5)	-	9(45)
중소기업근로자	-	6(30)	2(10)	1(5)	1(5)	-	-	-	1(5)	-	11(55)
장애인	경기도	1(5)	4(20)	2(10)	1(5)	-	-	-	1(5)	-	9(45)
	서울특별시	-	3(15)	1(5)	-	1(5)	-	-	1(5)	-	6(30)
	인천광역시	-	2(10)	1(5)	-	-	-	-	1(5)	-	4(20)
계	3(15)	29(145)	10(50)	5(25)	3(15)	-	1(5)	1(5)	8(40)	-	60(300)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m²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배정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치는 예비대상자 배정세대수입니다. (세대수의 500%)

※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의 500%를 선정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수가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

■ 분양일정(예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대상자 명단 회신	2024.10.04.(금) 오후 2시까지	- 당사 담당자에게 명단 송부
입주자 모집공고	2024.09.26.(목)	- 당사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ptcentralcity)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오픈	2024.09.27.(금)	- 건본주택 오픈
특별공급 청약	2024.10.07.(월) (인터넷 청약신청)	- 인터넷신청(www.applyhome.co.kr) 08:00 ~ 17:30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 접수 가능 (자격인증 서류 지참 필수), 건본주택 신청 10:00 ~ 14:00
당첨자발표	2024.10.16.(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계약 체결	2024.10.28.(월)~ 2024.10.30.(수)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 시간 : 10:00~16:00

- ※ 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의 한국부동산원 등록(미등록 시 청약 불가) 마감시한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회신 요청 일시를 엄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 대상자 통보 :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을 회신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통보 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정 대상자는 청약신청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25%;">구 분</th><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th><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0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 추천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III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10.07.(월) 청약홈 인터넷 : 09:00 ~ 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10:00 ~ 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건본주택(인터넷 청약자에 한함)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선정 방법
당첨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 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접수가 어려운 자가 건본주택 현장방문 청약접수 시 사업주체는 제출된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확인(검증)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면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또한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에 관련된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현장방문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법령을 우선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분양 문의 및 기타사항

■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

■ 분양문의 : ☎ 031-692-2731